

## 어린이보호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행정예고

군산내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변경지정 하고자 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. 6. 14.

군 산 시 장



### 1. 목 적

군산시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으로 군산내흥초등학교의 주변여건 변경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변경지정을 하고자 변경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

### 2. 관련근거

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
### 3. 공고방법 : 군산시청 홈페이지(www.gunsan.go.kr)

### 4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2. 06. 14. ~ 2021. 07. 04.(20일)

### 5. 의견제출 방법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. 7.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산시청 교통행정과로 방문,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기간 : 2022. 06. 14. ~ 2022. 07. 04.(20일)

나.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FAX 063-454-3769)

다. 접 수 처 : 전라북도 군산시 교통행정과 (☎)063-454-3813

라. 보내실 곳 : (우54078)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(군산시청) 교통행정과

마. 기타사항

-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- 공청회 개최계획 : 없음

6. 어린이보호구역 변경대상 및 범위  
[군산 내흥초등학교]



(변경전) 군산내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



(변경후) 군산내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

#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

예 고 내 용	어린이보호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행정예고(군산내흥초등학교)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생년월일	
	주 소	전화번호	

## 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

군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변경 지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2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

제 출 자

(서명 또는 인)

군산시장 귀하